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3. 2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3.18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 3.20.
- 다. 상정일자 :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2015.3.2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김 정 일

가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)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2조 →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27조

- 2) 지도위원의 관리를 위하여 지도위원의 위·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마련(안 제2조제2항 신설)
- 3) 민법의 개정으로 “금치산자·한정치산자”가 “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”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항목 용어 변경(안 제3조)
- 4) 지도위원의 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4조제3항)
- 5) 구·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9조제3항 ~ 제6항 신설)
 -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동 협의회 구성, 동 협의회회 회장으로 구 협의회 구성
 - 구·동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을 호선으로 선출
 -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회 의결로 결정
- 6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청소년 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, 2014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달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,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위촉절차, 해촉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어법에 맞지 않은 문구·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